

## 성적평가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학칙 제8장 시험, 성적과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성적평가 및 시험, 학사 관리 규정 제11장 시험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성적 평가)** ① 교과목별 성적 평가의 등급분류는 학칙 제38조(학업성적)에 따른다.

② 성적평가는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성적평가 및 처리)에 따르며, 매학기 출결,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각종 수행평가(과제, 프로젝트, 발표 토의, 조별과제, 부정기시험, 수업 참여도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기 초 수업계획서에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 비율을 명시해야 하고, 성적평가 시 공지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④ 출석점수는 전자출결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되어 교과목당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⑤ 과제, 프로젝트, 발표 토의, 조별과제, 부정기시험, 수업 참여도 등의 수행평가 항목은 수행평가 기준표(별표1)에 의해 평가한다.

⑤ 실습과 같이 등급별 평가가 어려운 경우 'P'(합격) 또는 'NP'(불합격)로 평가하며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한다.

⑥ 평점 평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산출 방법은 평점의 총 합계를 총 신청학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frac{(\text{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 \times \text{학점수})\text{의 합계}}{\text{수강신청 총학점수(PASS 과목 제외)}} = \text{학기 평점평균}$$

⑦ 성적 평가에 적용되는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F로 처리한다. (2018.2.27.개정)

⑧ 온라인수업의 경우 부정 응시로 인한 공정성 훼손 방지를 위하여 선택적 패스제도를 운영하여 진행하며, 학점 성적 부여 대신 'P'(합격) 또는 'NP'(불합격)으로 선택하여 평가한다. (2020.6.24.개정)

⑨ 평가항목별 성적반영 비율은 아래 표 범위 내에서 교수 재량으로 하되, 수업계획서 상에 사전 공지되어야 한다. (2020.12.3.개정)

평가항목	반영 비율	예시
출석	10~20	
중간(기말)고사	20~30	
과제, 프로젝트, 조별과제	10~30	-주어진 프로젝트(과제)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잘 수행하고 제출함 10점 -주어진 프로젝트(과제)를 2/3이상 수행했고 비교적

		충실하게 정리함 9점 -주어진 프로젝트(과제)를 2/3~1/3정도만 수행함 8점 -주어진 프로젝트(과제)를 1/3이하만 수행함 7점 -아예 제출하지 않음 6점
발표	10~30	-제시한 내용을 적절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발표 20점 -발표와 제시한 내용 중 1가지 미흡 및 결여 18점 -발표와 제시한 내용 중 2가지 미흡 및 결여 16점 발표와 제시한 내용 중 2가지 미흡 및 결여 0점
토론(양적, 질적 평가, 혼합평가), 퀴즈	10~30	-토론글 5점 배점시 토론참여 게시글 1회, 댓글 1회 시 100% 인정 -토론참여 게시글 1회, 댓글0회일때 0점 -토론참여 게시글 0회, 댓글1회일때 0점 -토론참여 게시글 0회, 댓글 0회일 때 0점
부정기 시험	10~30	-수시로 부정기 시험을 보고 -그 결과치를 누계 기록함(총20점 만점)
기타참여도(게시판 게시건수, 질문과 답변 등)	10~30	-참여도 5점 배점시 총 3회 이상참여시 100%(5점) -2회 참여시 70%(3.5점) -1회 참여시 30%(1.5점)

⑩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의 1.5배 부여, 보조공학기기 기자재 사용, 발표 및 과제 수행(컴퓨터 활용)에 있어 보조인력사용 등이 가능하며 이를 평가조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2021.8.6.개정),(2022.11.23.개정)

**제 3 조(평가방법)** ① 성적평가 방법은 과목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P/NP 평가로 구분하며 상대평가 비율 및 대상 과목은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성적평가 및 처리)를 적용한다. (2020.6.24.개정),(2023.08.02.개정)

②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 장소나 시간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지 교강사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2021.8.6.개정)

③ 장애학생의 경우 자필 시험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요청 시 서술형 시험을 학생이 표현 가능한 수준의 요약형으로 작성하도록 평가 조정한다.(2021.8.6.개정),(2022.11.23.개정)

**제 4 조(성적 관리)**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성적보고서 입력기간 성적을 입력하고, 인쇄된 성적보고서에 서명하여 지정기일 내에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학기별 성적은 개인별로 작성하여 성적확인기간에 종학학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한다.

**제 5조(성적 확인 및 정정)** ① 학생은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교학처를 통해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간고사 성적확인은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직접 이의 신청한다.

② 학기말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시작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정약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학처는 접수된 성적이의신청서를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성적 정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전달한다. (2018.2.27.개정),(2020.9.15.개정)

③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성적 정정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학처는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서 및 교수의 성적정정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점검하여 교학처장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 6 조(학사경고)** ①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1조의 2(학사경고), 학칙 시행세칙 제54조(학사경고) 및 학사관리규정 제79조(학사경고), 학사경고자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2회를 받은 학생은 차기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는 제한을 면제한다.

③ 교학처는 매학기 성적보고 종료 후 학사경고자를 해당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 특별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습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2020.2.25.개정)

**제 6 조의2(재수강)** ① 재수강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41조(학사과정의 재수강), 학칙 시행세칙 제45조(재수강) 및 학사관리규정 제73조(재수강)을 적용한다.

② 재수강 교과목을 수강한 학기는 추가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③ 교과목 성적이 D+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교학처에서는 매 학기 성적보고 종료 후 재수강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적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점검한다.

⑤ 재수강결과보고서는 전공 및 관련 부서로 배포하여 학생지도 및 개선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한다. (2018.2.2.신설) (2020.2.25.개정)

**제 7 조(성적평가관리위원회)** 교학처에서는 학생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의 객관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성적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

**제8조(성적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성적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2.2.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개선한다.

1. 출결사항 관리 여부
2. 성적등급별 성적평가 실시 여부
3. 수업계획서에 따른 성적평가 실시 여부
4. 성적평가 관련 교원업적평가 반영 사항 관리
5. 학사경고와 재수강 관련 점검 및 개선 (2018.2.2.개정)
6. 기타 성적평가 관리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